

공무국외출장 등 변경 계획서

1. 연수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연수기간	2024. 5. 27.(월) ~ 6. 2.(일) 6박 7일	2024. 5. 27.(월) ~ 5. 31.(금) 4박 5일
연수국	중국 (성도, 여강, 의빈, 촉남)	중국 (성도, 의빈, 촉남)
연수자	19명 (의원 9, 의회사무과 8, 집행부 2)	변경사항 없음
연수경비	총 47,180천원 의장·부의장 : 3,070천원/1인 의원·직원 : 2,736천원/1인 (환율 1,348원 적용) ※ 집행부 경비는 집행부에서 별도부담	총 34,040천원 의장·부의장 : 2,211천원/1인 의원·직원 : 1,974천원/1인 (환율 1,391원 적용) ※ 집행부 경비는 집행부에서 별도부담
변경사유	중국 국내 항공노선(여강→의빈) 폐지로 당초 일정 추진 불가	

※ 방문기관별 업무내용 및 출장자 역할은 당초와 동일함

2. 연수일정

당 초				변 경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1일차 (5.27.월)	인천	성도 (중국)	이동	1일차 (5.27.월)	인천	성도 (중국)	이동
2일차 (5.28.화)	성도	여강	○ 여강충의 전통시장 ○ 차마고도호도협				
3일차 (5.29.수)	여강	여강	○ 여강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여강고성	2일차 (5.28.화)	성도	의빈	○ 의빈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죽산업협동 창신센터 ○ 석해풍경구
4일차 (5.30.목)	여강	의빈	○ 의빈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죽산업협동 창신센터	3일차 (5.29.수)	의빈	의빈	○ 축남죽해 ○ 장안현 대나무예술공방 ○ 의빈시 정부 ○ 삼강지안 ○ 용두산 죽문화공원
5일차 (5.31.금)	의빈	축남	○ 의빈시 정부 ○ 장안현 대나무예술공방 ○ 이장고진	4일차 (5.30.목)	의빈	성도	○ 이장고진 ○ 무후사, 금리거리
6일차 (6.1.토)	축남	성도	○ 축남죽해 ○ 용두산 죽문화공원	5일차 (5.31.금)	성도	인천/ 담양	이동
7일차 (6.2.일)	성도	인천/ 담양	이동				

3. 연수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34,040,900	3,616,590	8,735,480	5,029,770	15,300,000	1,3600,000	
최용만	2,211,700	243,420	612,040	376,260	900,000	80,000	의장
박준엽	2,211,700	243,420	612,040	376,260	900,000	80,000	부의장
장명영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조관훈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최현동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이기범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정철원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최용호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박은서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이강임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김금덕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김정순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정상범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강형주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최현지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유장수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김찬우	1,974,500	208,650	500,760	285,150	900,000	80,000	

<국외여비 산출기준>

- 의원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별표6]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의회 의원 (제2호가목)
- 직원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일비·식비·숙박비의 지급) [별표4] (제2호가목)
- ※ 공무원여비규정[별표4] 국외여비지급표 의거 중국 : 다 등급
- ※ 환율은 1USD = 1,391원 (2024.5.13. /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
- ※ 십원단위 이하 절사